

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고,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울산지방검찰청

전문공보관 인권보호관 주민절

전화 052-228-4466

보도자료
2023. 12. 27.(수)

제목

이상헌 국회의원, 정치자금법위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기소

공소제기 후 공개의 요건 및 범위

- 피고인, 죄명, 공소사실 요지, 공소제기 일시, 공소제기 방식, 수사경위, 수사상황, 범행 경과 및 수사의 의의 등 (제11조 제1항)
- 제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미리 공개가 필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 검찰청의 장의 승인이 있는 경우(제11조 제2항 제2호) 제7조 제2호 내지 제6호의 공개금지정보

● 울산지방검찰청 형사5부(부장검사 김윤정)는, 오늘(12. 27.) '18. 6.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 및 '20. 4.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면서 D○○에게 제7회, 제8회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을 약속하고, D○○으로부터 정치자금 약 4,100만 원을 수수한 이상헌 국회의원 및 '18. 6. 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 A, 회계책임자 B 등 총 5명을 정치자금법위반, 청탁금지법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였음

1

피고인

- 이상헌 (69세, 더불어민주당 소속 現 국회의원, 재선, 울산 북구)
- A○○ (63세, '18.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대책본부장)
- B○○ (38세, '18. 재보궐선거 당시 회계책임자)
- C○○ (62세, '18. 재보궐선거 당시 후원회장)
- D○○ (61세, '18. 및 '22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 탈락자)

2

공소사실 요지

가. 피고인 이상헌

(1) D○○의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 관련 정치자금법위반 부분

- '18. 6. 실시되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, D○○에게 자신의 선거를 도와주면 제7회 지방선거*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,
 - '18. 4. 15.과 4. 20. D○○으로부터 재보궐선거 후보자 면접 경비, 당내 경선기탁금, 선거활동비 명목으로 현금 합계 2,2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[정치자금법위반]
- * 울산 북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제7회 지방선거는 2018. 6. 1. 동시 실시
- '18. 5. 1. D○○이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하였으나 심사절차에서 탈락하자, 다시 '22. 제8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을 해주겠다고 약속한 후,
 - '18. 5. 17. D○○으로부터 선거유세차량 임차 비용 명목으로 현금 1,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[정치자금법위반]
 - '21. 5. 15. 위 재보궐선거 및 '20.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후, 다음 지방선거 비례대표 구의원 공천 약속이행을 기대하는 D○○으로부터 아들의 결혼식 축의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 원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[정치자금법위반, 청탁금지법위반]

(2) 기타 정치자금법위반 부분

- '18. 4. 20.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기탁금을 마련하지 못하던 중, E○○으로부터 1,000만 원을 무상으로 차용하여 이자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아 [정치자금법위반]
- '18. 4. 20.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기탁금 1,300만 원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무통장 송금, 지출하여 [정치자금법위반]

나. 피고인 A○○ 및 피고인 B○○*

- '18. 4. 20. 이상헌과 공모하여 ① D○○으로부터 당내 경선기탁금 명목으로 1,300만 원, E○○으로부터 1,000만 원에 대한 이자상당액의 정치자금을 기부받고, ② 재보궐선거 당내 경선기탁금 1,300만 원을 신고된 계좌를 통하지 않고 더불어민주당 계좌로 무통장 송금, 지출하여 [정치자금법위반]

* B○○은 1,300만 원 정치자금 수수 및 미신고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지출을 기소함

다. 피고인 C○○

- '18. 4. 17. D○○으로부터 직원들 급여 등 선거사무소 운영비용 명목으로 1,000만 원을 기부받아 [정치자금법위반]

라. 피고인 D○○

- '18. 및 '22. 각 지방선거 울산 북구 비례대표 구의원 후보 공천과 관련하여, 가의 (1)항, 다항과 같이 이상헌과 C○○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하여 [정치자금법위반, 청탁금지법위반]

3

수사 경과 및 계획

가. 수사개시 경위

- D○○은 '22. 5. 17. 「민주당의 밀실야합 공천을 규탄한다」라는 성명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 진행

※ 당시 기자회견은 이상헌 의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, D○○에 대한 '비례대표 임기 분할' 제안, 비례대표 공천에서 당선이 불가능한 3순위 배정 등 내용임

- 이와 관련하여 **고발장이 접수되어 수사개시**

나. 수사 경과

- '22. 6. 23. 당청, 고발장 접수 및 울산경찰청 이송
- '23. 11. 14. 울산경찰청, 사건 송치
- '23. 11. 15. ~ 12. 22. 당청, 피의자들 소환 조사 등 보완수사
(12. 2. 이상헌 의원 소환 조사)
- '23. 12. 27. 당청, 이상헌 의원 등 5명 불구속 기소

다. 향후 계획

- 국회의원 후보자, 국회의원 신분으로 지방선거에서 공천을 약속하고 불법정치자금 수수한 범죄인 바,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임 ☒